

미얀마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 수도 : 네피도(Nay Pyi Taw, 인구 약 99만 명)
3. 인구·면적 : 약 5,441만 명(2020년), 약 677,000km²(한반도의 약 3배)
4. 공용어 : 미얀마어
5. 1인당 명목 GDP : 1,245달러(2019년)
6.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미얀마 헌법재판소

- Constitutional Tribunal of Myanmar

2. 연혁

- 2008. 05. 29. 국민투표를 거쳐 신헌법 제정
- 2011. 03. 31. 헌법재판소 설치

3. 구성

- 인 원 :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자 격 : 미얀마 의회의원. 또는 50세 이상의 미얀마 국민으로 헌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하원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5년 이상 지방·주 고등법원 법관 또는 10년 이상 지방·주 단위 이상에서 사법공무원 또는 법무관으로 재직하였거나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였거나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저명한 법률전문가로,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의회의원이 아닌

자

- 임 기 : 재판소장 및 재판관 모두 5년 임기
- 임명 절차
 - 헌법재판소장 :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 중 1인을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장으로 임명
 - 헌법재판관 :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한 후보로 구성된 9인의 후보 명단을 대통령이 제출하고,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연방의회는 후보들이 명백히 자격이 없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를 거부할 권한이 없음

4. 권한

-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
- 연방의회, 지방·주 의회 및 자치지역·구 협의체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연방정부, 지방·주, 자치지역 행정 조치의 위헌여부 심판
- 연방정부와 지방·주 정부 간, 지방과 주 정부 간, 지방·주 정부 상호간, 지방·주와 자치지역 간, 자치지역 상호간 헌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
- 지방·주, 자치지역에서 연방정부 법을 적용하는 경우 연방정부, 지방·주, 자치지역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분쟁 심판
- 연방 영토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사건 관련사건 심사 및 심판

5. 심리 및 결정

- 대통령, 상·하원 및 상·하원 합동 연방의회 의장, 대법원장 및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사건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해석, 판결 및 의견을 구할 권리를 가짐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주의 장(長), 지방·주 의회 의장, 자치지역·구 협의체 의장 및 상·하원 의원 1/10의 결의로 사건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해석, 판결 및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결정적임

6. 연락처

- 주 소 : No.54,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전 화 : +95 67 3430263
- 팩 스 : +95 67 3430247
- 홈페이지 : <https://www.constitutionaltribunal.gov.mm/> (미얀마어)
<https://www.constitutionaltribunal.gov.mm/en> (영어)

※ 출처 : 미얀마 헌법

미얀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2020. 4. 작성)